



중소벤처기업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창업기획자와 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경우 PEF 결성관련 법률해석 홍보 요청

1. 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벤처투자법」 시행(’20.8월)에 따라 창업기획자에 대한 PEF 결성 금지 등의 행위제한이 신설되었고, 이는 창투사에 비해 규모가 작고 초기창업기업 육성에 집중하는 본래 창업기획자의 성격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라는 취지의 입법입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창업기획자와 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도 갖추고 있으므로 **창업투자회사에게 허용된 PEF 결성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4. 동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법령 개정 전까지 유권해석에 의해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업투자회사에는 PEF 결성을 허용하기로 하였기에 각 협회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인생략

수신자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귀하, (사)한국엔젤투자협회장 귀하, (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사)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장

사무관 서정남 투자회수관리 전결 2020. 11. 23.
과장 전세희

협조자

시행 투자회수관리과-9323 (2020. 11. 23.) 접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 www.mss.go.kr
(둔산동)

전화번호 042-481-4487 팩스번호 042-489-9693 / seojn@korea.kr / 대국민 공개